

기능시험 채점기준·합격기준(제66조관련)

1.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

가. 채점기준

시 험 항 목	감 점 기 준	감 점 방 법
(1) 굴절코스 전진	10	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(2) 곡선코스 전진	10	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(3) 좁은길코스 통과	10	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(4) 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	10	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,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교통콘을 접촉한 때마다

(주)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(1)과 (2)의 시험항목만을 실시한다.

나. 합격기준

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,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

- (1)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- (2)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(3)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